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49
------------	-----

2018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8일, 성중기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8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80%, 5·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50%,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해부상군경과 재해공무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했

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차장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3. 참고사항(관련법령)

가.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11.1.~11.8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주차계획과) : 보류
 - 대상자 중복에 따른 실효성 저하 우려
 - 요금감면 제도와 서울시 주차정책과의 상충성
 - 간접적인 혜택 부여 방안 마련 필요

5.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의 보훈보상대상자를 서울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1)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 및 신체적 상해 등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는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서울지하철 역사내 엘리베이터 1억 1동선이 미확보된 역은²⁾

1)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엘리베이터 1억 1동선 미확보 역사 :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동

10%에 불과하나 지하철 역사 각 출입구 방면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은 아니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이동방향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저상버스 보유율 역시 44.7%에³⁾ 불과한 만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불가피하게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적정 수준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새롭게 포함하고자 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현행 조례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소지도 있음
- 한편 현행 조례에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이미 10호에 걸쳐 정하고 있으나 각 감면 대상별 선정사유 및 할인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각 감면 대상과 할인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근거마련도 필요할 것임

선(지상↔대합실↔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역사

구 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역사수	277	10	50	34	26	51	38	51	17	
1동선 확보	역사수	250	9	48	32	25	45	32	45	14
	비율(%)	90.2	90.0	96.0	94.1	96.1	88.2	84.2	88.2	82.4

3) 2018년 저상버스 추가배정 계획, 버스정책과-26538(2018.10.4.)

【저상버스 운행현황】

(’18.9.12. 기준)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3	10	260	75.8%
운행대수	7,405	245	3,203	44.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보훈보상대상자가 불가피하게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적정 수준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임

답변 : 기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8일

발 의 자 : 성중기 의원(1명)

찬 성 자 : 우형찬, 경만선, 정지권, 송도호,
정진철, 이은주, 송아량, 오중석,
김태호, 이승미, 추승우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80%, 5·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50%,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재해부상군경과 재해공무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차장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1호에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을 규정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상위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제2호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제4호 재해부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15,635천원(연평균 3,127천원)

- 예상되는 수입감소액은 5년동안 15,635천원으로 연평균 3,12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

- 추계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건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의 방법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주차요금 감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체 공영주차장 이용건수 중 국가유공자(상이자) 이용건수, 이용횟수를 활용함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 2018년 8월말 기준 서울시 거주 재해부상군경은 634명, 재해부상공무원은 6명으로 확인됨((붙임 1) 보훈대상별 현황(서울시) 참조)

- 2017년도 서울시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 258,630천원, 이용 건수는 38,095 ((붙임 2) 국가유공자(상이자) 감면현황 참조)

※ 2017년말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전체 국가유공자(116,835명)의 22.6%인 26,398명

=상이군경(전상/공상군경) 18,505명+고엽제후유의증자 7,506명+4.19유공자 315명+기타유공자중 6.18자유상이자 72명

-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2017.12.31. 기준, 단위 : 명)

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기타국가 유공자
116,835	1,958	18,505	21,173	22,497	315	594	7,506	592	43,543	152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635천원(연평균 3,127천원)

- 산출 방식 $\sum_{i=1}^5$ (연간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 + 연간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 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조례안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	3,096	3,096	3,096	3,096	3,096	15,480
세입	제7조 제11호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	31	31	31	31	31	155	
	소계(a)		3,127	3,127	3,127	3,127	3,127	15,635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 ≍ 15,48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재해부상군경 주차요금 감면액 = 이용 건수* × 전당 요금* × 할인율(50%)
= 912건 × 6,790원 × 0.5 = 3,096천원

(이용 건수, 전당 요금은 2017년 서울시 국가유공자가 이용한 건수와 금액을 적용)

· 이용 건수 = 재해부상군경 인원 × 연평균 이용횟수 *

= 634명 × 1.44회 = 912건

※ (재해부상군경의 1인당) 연평균 이용횟수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이용 건수 ÷ 국가유공자(상이자) 인원

= 38,095건 ÷ 26,398명 = 1.44회

· 전당 요금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 합계/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
건수

= 258,630천원/38,095건 = 6,790원

○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 ≍ 15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_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재해부상공무원 주차요금 감면액 = 이용 건수* × 전당 요금* × 할인율(50%)
= 9건 × 6,790원 × 0.5 = 31천원

· 이용 건수 = 재해부상공무원 인원 × 연평균 이용횟수*
 = 6명 × 1.44회 = 9건

※ (재해부상근경의 1인당) 연평균 이용횟수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감면 건수 ÷ 국가유공자(상이자) 인원
 = 38,095건 ÷ 26,398명 = 1.44회

· 건당 요금 = '17년 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요금 합계/국가유공자(상이자) 주차 건수
 = 258,630천원/38,095건 = 6,790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분 석 관	박 종 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